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6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11.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9.11.18.

다. 상정일자: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(2019.12.6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기획예산과장 박창열】

### 가. 제안이유

2019. 8. 1.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,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2019.8.1. 자 조직개편 관련 주관국(부서) 명칭 변경(별표)
- 2)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, 삭제, 정정(별표)
- 3) 현행 법령에 맞춰 근거 법령 조항 정비 등(별표)
  - 지역문화사업: 지역문화 진흥사업, 주민 문화활동 지원사업
  - 생활체육사업: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·관리
  - 문화교육사업: 문화교육 프로그램 발굴, 육성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#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2019년 8월 1일자 마포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주관국(부서)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행정국을 행정관리국으로, 어르신복지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,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를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로 하고자 하며,

- 또한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, 삭제, 정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, 약국에 관한 사무가 신설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에 관한 사무,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가 정정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위임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, 소별 개정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